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권리사용료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

안태건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A study on dispute cases related to royalty and license fee whe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Tae-Kun Ahn^a

^a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0 December 2021, Revised 24 December 2021, Accepted 24 December 2021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oyalty and License fee on this issue and presented implications for future taxation of Royalty and License fee and digital content imports related to reproduction rights. If the price related to imported goods and the price not related to them are combin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tutes to supplement the allocation method of royalty and license fee. In addition, if there is an agreement or a back contrac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the headquarters or branch office other than the trading party, a method of inducing the importer to voluntarily report it when reporting imports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Royalty and License fee is taxed or not must be determined after examining the various contract details and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Keywords: customs valuation, Royalty and License fee, Right to reproduce, tariff

JEL Classifications: F23, K23, K34

^a First Author, E-mail: tkahn@pknu.ac.kr

I. 서론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용역,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유형물인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법은 유형물인 수입물품에 대해서 그 거래가격을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에는 추가적으로 몇가지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 중의 하나로 권리사용료가 규정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입자는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사용료(Royalty and License fee)를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권리사용료와 관련되어 여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급형태가 원인이 되고 별도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해당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사용료는 최근 4차산업혁명과 ICT 기술의 발달로 특정물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사용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수입자 간의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부과와 관련된 분쟁은 수

입통관이 완료된 이후 관세조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과세전통지를 통해 수입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런 경우 이미 해당 수입물품은 판매 또는 사용된지 한참 후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큰 부담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를 진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권리사용료의 과세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법과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지적재산권의 권리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처럼 유형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처럼 무형물에 대한 대가이다. 수입물품이 아닌 무형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무형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유형물인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물인 권리에 대한 대가는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물품의 대가 내지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라는 무형물의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면 반드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하는 법정요소가 된다.

한국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권리'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와 통상적으로 영업비밀로 지칭되는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평가협정 제8조 제1항에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에 대해서 '수입물품의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재판매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지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과 WTO 협정의 내용은 권리사용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특허와 실용실안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확한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지만 그 영역 자체가 애매모호한 영업비밀도 권리사용료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리사용료 자체가 물품의 가격과 별도의 형식, 예를들어 수입자의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연말에 1년간의 권리사용료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들이 사용되는 경우 정확하게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법적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물품에 존재하는 무형물인 권리와 그 사용대가인 권리사용료의 과세 문제는 해석상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분쟁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2.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의 가산

분명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가 무조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사용료가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동시에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한국 기업이 외국의 권리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권리권자가 보유한 특허권 등의 사용권리를 얻거나 특정 제품 혹은 공정의 생산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사용료 지급과 함께 수입되는 물품은 이러한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게 될 물품의 원자재, 중간재, 부분품, 생산설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수

입되는 물품과 별도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권리사용료 지급과 수입물품의 관련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거래조건성의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략 3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구매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이 없다면 수입물품의 구매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조건성으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제3자인 권리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로 인하여 수입물품을 수입해 올 수 있게 된 것이므로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과세형평을 위해서 제3자 지급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반드시 가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입신고나 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매매계약에서 이러한 권리사용료 지급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셋째,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이 경우 사실상 권리사용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하게 과세형평을 위한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가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다양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물품매매계약서만을 검토해서 권리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모기

업 또는 자기업을 활용하여 권리사용료 지급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사용료 지급은 여러 거래의 실체와 거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재현생산권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 중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재현생산권(Right of Reproduction)이라 하고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과세가격 가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현생산권은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단순하게 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입물품에 담겨있는 아이디어, 생각, 창작물 등 무형의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도 재현생산권의 대상이 된다. 영화, 음악,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DVD와 같은 전달매체에 담아서 대량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결국 재현생산이 된다. 따라서 견본, 도면, 시제품, 원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대량생산하는 복제품을 만드는 행위에서 이러한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관세법령은 이러한 재현생산권에 대해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더라도 과세가격 가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보통 수입되는 전달매체의 자체적인 가격만 관세부과를 위한 과세가격이 된다.

4. 권리사용료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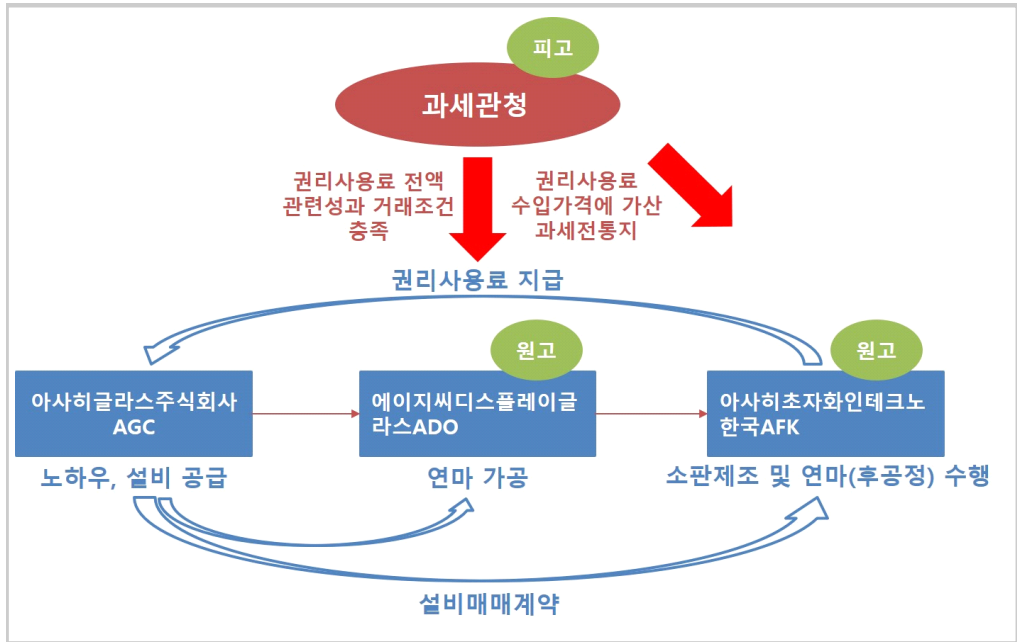
권리사용료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공통되게 언급하고 있다.

Kim Tae-In and Choi Chang-Hwan (2008)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부품 구매에 대해서 로열티의 거래조건성에 대해 영향을 주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물품 구매에 대한 선택권, 수입가격에서의 공제내용

그리고 로열티 지급과는 독립적인 수입 수평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Lee Young-Youn and Kim Tae-In (2010)은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 2가지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의 법규정과 그 해석 충족 기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사용료 가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Lee Byung-Lak and Rheem Sung-Sue (2016)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WTO 관세평가협정과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사용료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상황과 가산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권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만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며, 거래조건이 아닌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Kil Yong-Won (2020)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을 분석하여 다국적 기업이 최초의 과세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2차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관세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수입부분품의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재조사 금지의 원칙을 관세에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Kim Jin-Kyu and Park Se-Hun (2021)은 초국적기업의 상표권 권리사용료와 관세평가에 대해 과세가격 가산 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WCO 예해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 요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체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권리사용료의 과세여부에 대해서 여러 사례와 규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권리사용료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거래 단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권리사용료 관련 분쟁을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결정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Fig. 1.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4110,34127 Decided February 14, 2019.



source : Author's Analysis

Ⅲ. 권리사용료 관련 판례 분석

1. 설비에 관한 특허, 노하우 대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 34110, 34127판결)

1) 거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이하 '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AFK')으로 모두 일본 회사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이하 'AGC')로부터 액정디스플레이(LCD)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수입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과세관청으로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이다. 원고들은 일본의 AGC로부터 LCD용 소판유리를 구매, 연마, 가공하여 LCD 유리기판을 생산 판매한다. LCD유리기판은 원료를 배합하여 용융시킨 다음 성형하여 소판유리를 생산하는 소판공정과 이 소판유리를 보다 정밀하게 추가 가공

하여 평탄하게 만드는 연마공정을 거친다. 일본회사인 AGC로부터 제공받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ADO는 연마가공을 AFK는 소판제조 및 후공정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을 한다. 원고들은 AGC 사이에서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비에 포함되는 기계, 부품 그리고 예비품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AGC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계약에는 소판, 연마관련 특허와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순매출액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갱신이 되었고 1차 계약은 2005년, 2차계약은 2007년, 3차 계약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문제는 2009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사업운영일체에 대한 노하우가 포함되었다. 이에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은 AGC에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2) 사건 처분

서울세관장은 2012년 4월 19일에 원고 ADO에게 “2010년과 2011년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약 685억 원이 이 사건 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수입물품과 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3-4조 제3호 단서, 제4호 나목의 안분식을 적용하여,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 ADO는 해당 고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2013년 6월 22일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처음 과세전통지 내용과 동일하게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기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구세관장은 원고 AFK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권리권자인 AGC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각 설비별로 나눈 다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AGC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이 사건 설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제4호 나목의 안분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설비별로 처분시까지 지급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 판단 근거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해외업체가 제공하는 특허와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되었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비, 기계 그리고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원고들이 국내에서 유리기관 제조에 필요한 모든 특허와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거래조건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

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인 설비는 권리권자의 특허와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되었고 수입업자인 원고들은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설비 등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성을 충족했다 볼 수 있다.

관세청 고시에서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대가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고 그중 일부 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그 권리사용료를 전체설비 등의 가격에 대한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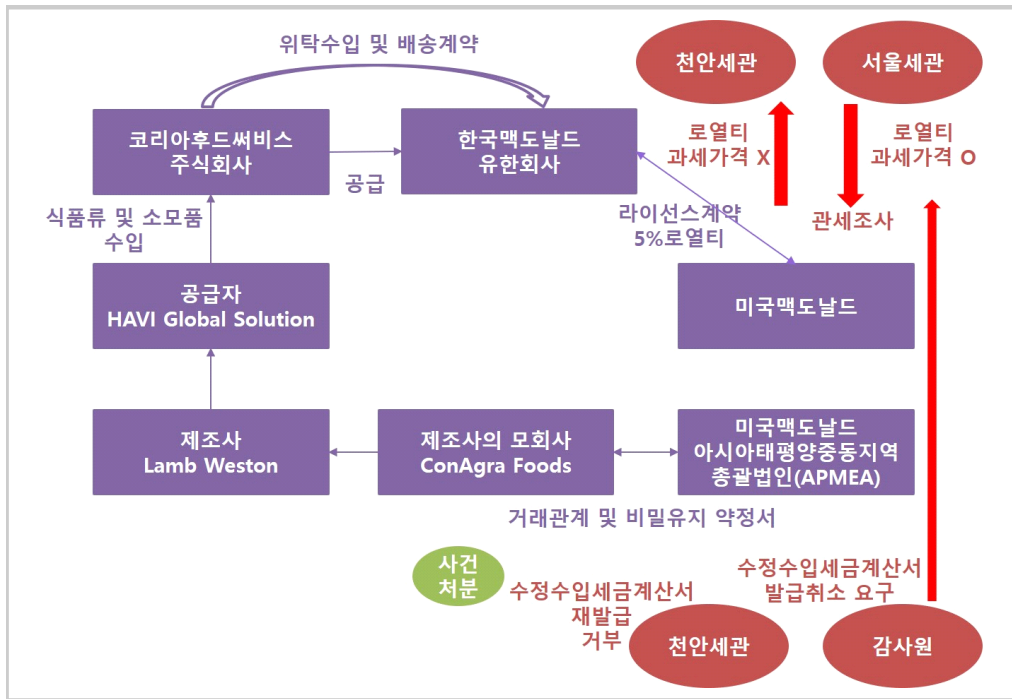
이러한 규정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평석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본법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AGC)에 지급한 권리사용료에는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와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에 대한 대가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또는 관련성이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가 함께 포함된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3호의 단서의 안분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구분할 수 없고,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되어 법령의 위법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안분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해당 사건의 권리사용료에는 수입되는 물품인 설비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이외에 설비와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Fig. 2.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8608 Decided December 24, 2020.



source : Author's Analysis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안분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해당 사건 수입설비의 과세가격결정에 있어서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 처분은 위법하다.

해당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의 국제거래의 분업화와 관련하여 거래 단계와 계약 내용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는 점이다. 특히 이 사례의 계약처럼 단순한 설비매매계약에 더해서 그러한 설비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이 묶여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분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는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입법이 아닌 행정입법으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향후 계약관계의 고도화를 대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된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안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로열티 지급(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1) 거래 개요

이 사례의 원고는 코리아하이드서비스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천안세과장이다. 식품의 대항수입을 수행하는 원고는 1998년 1월 8일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와 위탁수입 및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식품류 및 기타 소모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한국 맥도날드는 미국 맥도날드 본사와 라이

선스계약 체결하고 미국 맥도날드의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미국 맥도날드에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년 1월2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Lamb Weston(이하 'LW')가 제조한 냉동감자를 HAVI Global Solutions로부터 수입하여 한국 맥도날드에 공급하면서 상기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2) 감액 경정청구

원고는 2011년 8월 8일 및 2012년 1월 13일에 천안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권리사유에 해당되는 로열티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감액 경정청구에 대해서 천안세관장은 2012년 1월 16일 및 2012년 3월 2일에 경정청구 중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감액경정 이후 2014년 5월경까지 물품을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는 명백히 과세당국의 착오로 이 사건의 거래단계에서는 명백히 수입되는 식품과 관련된 로열티가 해외의 권리권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거래관계로 인한 약정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3) 관세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

해당 사례는 그 이후 서울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조사 결과 서울세관장은 2014년 6월 26일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상기 감액경정으로 환급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9억여원과 당초 감액

경정 이후 2014년 5월경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로열티의 과세가격 미가산분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7억여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원고는 증액경정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추가 납부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에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종결될 것 같았던 이슈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경 서울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는 것과 냉동감자의 제조사인 LW사의 모회사와 미국 맥도날드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 총괄 법인사이의 거래관계 및 비밀유지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서울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6년 3월24일 천안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천안세관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4) 원심판결(서울고법 2019. 6. 26. 선고 2018누56581 판결)

상기의 천안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을 결정한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내용을 통해 해당 사건의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감액 경정청구에서 위탁수입계약과 본사간의 라이선스 계약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고, 수입물품에 지적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원고가 천안세관장에게 해당 거래의 위탁수입계약 사본, 가격합의서(Pricing Protocol) 그리고 제품사양설명서(Product Specification)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천안세관장은 해당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에 빠졌다. 또한 원고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자인 LW와 그 모회사 그리고 미국맥도날드 사이의 지분 또는 계약 관계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안세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관련 규정¹⁾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세관장이 세액 결정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당 사건의 원심은 상기의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원고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요청을 거부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평석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이한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 7958 판결과 사실관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사실관계가 유사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하여 법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든 사실 그 자체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당되는 거래에서 위탁수입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 또는 존속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감액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 계약들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를 사실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경정청구 과정

에서 피고인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가격합의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감액 경정청구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약정서의 존재 여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권한도 없는 원고가 물품 제조사의 모기업과 납품처의 모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서를 입수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기의 판단요지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천안세관장이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 재발급을 거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렇듯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이 상이하였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납부 이후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상이하게 내려졌다. 이러한 권리사용료 과세가격 가산의 문제와 그리고 부차적인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과세관청과 사법부의 상이한 판단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로열티를 포함한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복잡한 거래단계와 거래정황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계약 당사자가 상이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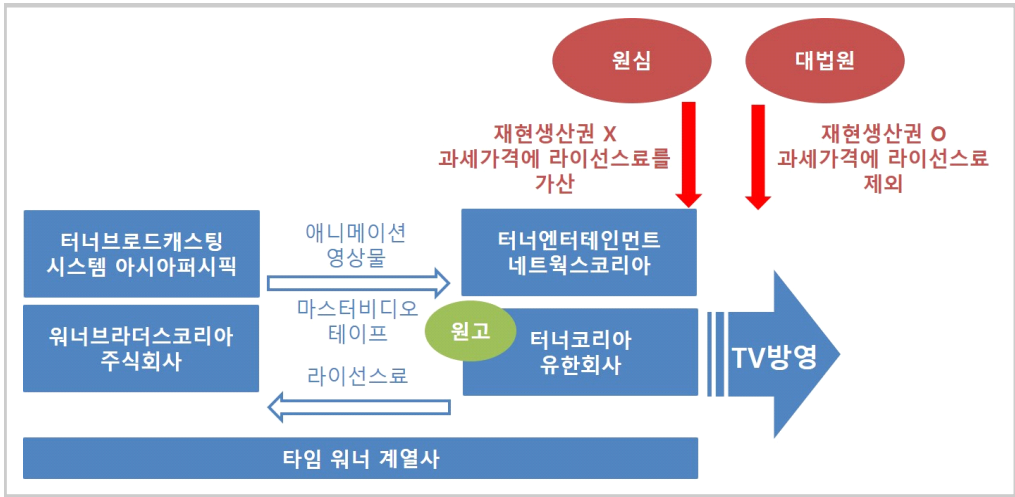
3. 재현생산권 사용대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1) 거래 개요

해당 사례의 원고인 터너코리아 유통회사는 타임워너의 계열사인 터너엔터테인먼트네트웍스 코리아 유통회사의 TV 채널 사업자이다. 터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2호 (다)목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Fig. 3.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7599 Decided February 27, 2020.



source : Author's Analysis

니코리아 유한회사는 해외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원고는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퍼시픽 및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국내에서 TV를 통해 방영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반대급부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재현생산권의 판단근거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권리사용료를 더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재현권에 대한 대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사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물품 및 과세 처분

원고는 2010년 8월 31일부터 2015년 6월16일까지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 이를 인천세관장은 수리하였다. 이에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인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을 지급되었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2015년 8월27일부터 2016년 1월27일까지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4) 판결 요지 및 평석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영상물에 대한 라이선스료는 쟁점 수입물품인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와 관련되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된다. 이는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세관장의 경정, 고지는 적법하다.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전혀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³⁾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례에서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상이한 판단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재현생산권을 단순히 복제하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였고 대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복제 이외에 통신망이나 방송망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위도 재현생산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영상물을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입하지 않고 공급자의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는 비디오테이프라는 유형물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영상물, 음악,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 방영, 서비스 하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리적인 전달매체를 활용하기 보다는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현생산권에 대한 해석을 물리적인 복제로 국한하지 않고 방송, 재생, 실행의 영역으로 확장

하여 해석하는 입장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IV. 시사점

1. 라이선스계약에서의 물품관련성을 구분하는 문제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관련성의 경우 단순히 특허를 실현하기 위한 물품이거나 그러한 특허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처럼 단순히 물품과 지적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진다면 과세가격에 가산여부를 결정하기가 편해진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대체적으로 범용 기술이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정확하게 해당 수입물품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입물품과 지적재산권이 관련성을 찾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수입물품만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기타의 권리 내지는 과세할 수 없는 경제활동의 반대급부라는 것을 주장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 34110, 34127판결의 경우 수입업체가 권리권자이자 수출자에게 지급한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대가 이외에 라이선스계약에 의하여 순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의 비율에 따라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라이선스가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물품과 관련이 없는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과 관련된 부분만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분 계산만으로는 현재의 규정만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된 지급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대가를 구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해당 판결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권리사용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

료에 대해 ‘이와 유사한 권리’로 저작권, 영업비밀(경제적 가치가 있고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 여러 가지 명칭과 성격을 다르게 해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다면 충분히 해당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세가격은 낮아지고 과세가격이 낮아지면 납부할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절세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권리사용료가 과세되지 않도록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관련성을 부인하고 일반적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구매자가 연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서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관세법시행령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경우 그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확장해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의 안분방식을 다양한 거래 정황 시나리오에 맞춰서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관세평가협정의 개정이나 관세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2. 거래단계의 고도화 문제

글로벌 경영 환경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도 생산기지 또는 판매법인을 해외에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로열티 지급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당사자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기업 또는 자기업을 이용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세관당국이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의 경우 세관당국의 경정청구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원인이 있지만 거래 정황을 살펴보면, 해외에 있는 본사 또는 모기업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로열티등이 지급되어 이를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본지사간의 거래 또는 모기업을 통한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의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세법 체계는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연결재무제표상의 모기업 또는 자기업을 통한 별도의 약정 존재 여부에 대해서 수입신고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비밀약정이나 이면계약의 존재가 세관의 조사를 통해서 파악이되면 행정형벌을 처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경영환경은 전세계를 생산공장과 판매시장으로 하는 글로벌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3.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과세형평의 문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57599 판결은 해외공급자가 마스터테이프를 통하여 영상물을 공급하고 이를 수입업자가 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상황에서 재현생산권의 이슈가 발생하였다. 재현생산권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실질적인 이용에 해당된다. 보통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화, 게임 등을 국내에서 전달매체를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이용하여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달매체에 관련 콘텐츠를 담거나 통신망, 방송망을 이용한 공급 및 방송은 명확히 수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수입 후 행위에 대해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은 권리사용료 과세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규정한 취지에 맞지않다고 볼 수 있다.

영상물, 음악, 영화, 게임과 같은 디지털 권

텐츠의 경우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입되는 경우 무체물의 수입에 해당되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전달매체에 담겨져 수입된다면 한국의 경우 전달매체와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의 가치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관세법시행령 제19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담겨있는 전달매체는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유형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의 예외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HS 8523호 속하는 전달매체에 담겨있는 경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최근의 문화콘텐츠 소비패턴의 변화이다.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서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OTT(Over the top)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서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입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동일한 콘텐츠를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체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로서 관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향후에도 물리적 형태의 전달매체를 구매하기 보다는 OTT 서비스처럼 해외스트리밍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그 관리의 대상을 유형물로 국한하고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서 제도적 정비 또는 별도의 입법이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수입물품의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세율과 함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가격결정에는 단순히 수입물품의 신고되는 거래가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하여 판결이 있었다.

권리사용료가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것이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유형물의 수입에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물품에 무형의 지적재산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타당한 일이 된다. 관세법령에서는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형태가 직접적이고 단순하였으나 최근의 글로벌기업들의 거래에는 본사와 모기업이 개입하기도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근의 한국 대법원의 권리사용료와 재현생산권에 대한 관례를 분석하여 향후 권리사용료의 과세와 재현생산권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수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있는 대가와 관련성이 없는 대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권리사용료의 안분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 당사자가 아닌 본사 또는 지사를 통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약정이나 이면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가 수입신고할 때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재현생산권에 대한 지급은 수입 이후 물품의 복제 및 실연을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이러한 재현생산권 이외에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한 콘텐츠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권리사용료의 과세여부는 단편적으로 규정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내용이나 정황을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권리사용료와 관련

된 대법원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심판원 등의 사례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Kil, Yong-Won (2020), "The calculation of Royalties for imported Parts and Prohibition of Repetitious Investigation Under the Customs Ac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745 Decided February 13, 2020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13(2), 213-245.
- Kim, Byung-Soo (2013), *Customs Valuation*, Seoul: Sein Books.
- Kim, Ki-In (2015), *Minute Explanation on Customs Valuation*, Seoul: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 Kim Tae-In and Chang-Hwan Choi (2008), "The standard of Settlement on Condition of Sale of Royalties",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9(2), 45-65.
- Kim, Jin-Kyu and Se-Hun Park (2021), "A Study on the Customs Valuation of the Taxable Requirements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The Korean Rese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 Law*, 91, 275-292.
- Lee Byung-Lak and Sung-Sue Rheem (2016), "A Study on Payments of Royalty & License Fee and Customs Valuation", *The Korean Rese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 Law*, 69, 673-698.
- Lee, Young-Youn and Tae-In Kim (2010), "A Case Study on the Taxation of Royalties by Global Corporation's Internal Transactio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6(4), 537-550.
- Korea's Customs Act.
-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91Nu7958 Decided April 27, 1993.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4110,34127 Decided February 14, 2019.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7599 Decided February 27, 2020.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8608 Decided December 24, 2020.